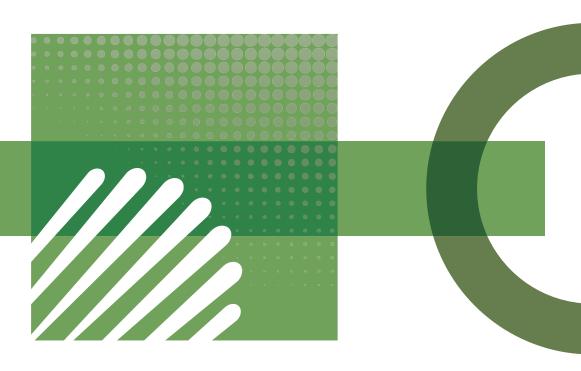




# 건전한 재정<del>운용을</del> 위한 법률 개선과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법률 개선과제

#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법률 개선과제

2016. 6.



이 보고서는 「국회법」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16.5.2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발 간 사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잠재성장률 하락 등다양한 위협요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있도록 재정 관련 법률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법률 개선과제」는 제20대 국회 개회를 맞이하여 발간하는 보고서로서 예·결산 분석, 경제분석, 사업평가 및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재정 관련 법률 개선과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법률 개선과제」를 통하여 2008년 21건, 2009년 26건, 2011년 23건, 2012년 32건, 2013년 24건 등 총 126건의 법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고, 그 중 27건의 개선과제가 법률안으로 발의·통과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고서는 '수시배정 예산배정내역의 분기별 국회 제출: 「국가재정법」', '국가재정 운용계획 제출 시 재정정보의 공개: 「국가재정법」' 등 총 46건의 개선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률안 발의·심사의 편의를 위하여 '국회 재정통제 강화', '재정건전성 확보', '분야별 개선과제' 등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개선과제를 분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개선과제가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전한 국가재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법률 관련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준 기

# 차 례

내정건전성 확보
1. 행정입법 비용추계서의 국회 제출:「국회법」
국회 재정통제 강화
2. 수시배정 예산배정내역의 분기별 국회 제출: 「국가재정법」 9         3. 현물출자의 국회 사전동의 필요: 「국가재정법」 11         4.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국회 제출범위 확대: 「국가재정법」 13         5.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국가재정법」 15         6. 국고보조금 지급대상과 기준보조율을 법률로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7
내정정보 투명성 제고
7. 예산총칙에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의 차입금·채권발행 한도액 적시 필요: 「국가재정법」 ····································
「국가재정법」
10.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응지방비 현황 포함 필요:「국가재정법」32
11. 대상과 단가로 구분된 의무지출 산출내역 국회 제출:「국가재정법」 ··············· 34 12. 예산안편성지침에 부처별 지출한도 포함:「국가재정법」 ····································

##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

13.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 요구 시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기간 보장 필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1
분야별	개선과제
[R&D]	
	국가R&D과제 기획·선정 평가의 공정성 강화:「과학기술기본법」 47 국가 R&D 사업 관리 규정의 법률화 필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49
	기금자금의 목적 외 사용 시 환수규정 마련: 「방송통신발전기본법」 51 소프트웨어 취약점 신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3
[문화·치	세육·관광]
18.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배분비율 관련 규정 정비: 「국민체육진흥법」 57
[교육]	
19.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63
[외교·등	통일]
	재외공관용 미술품 처분 절차 및 처분 수입금 국고납입 제도 마련:「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69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기금화:「한국국제협력단법」 72

### [국방]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79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기준 명시 및 지원의 제한 근거 마련: 「병역법」·· 81
[일반•	지방행정]
<ul><li>25.</li><li>26.</li><li>27.</li></ul>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의 법적 근거 마련: 「경찰관 직무집행법」 87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한도 법률에 규정: 「지방공기업법」 89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 한도제 도입: 「지방세특례제한법」 92 소상공인을 포함한 보험목적물 범위의 확대: 「풍수해보험법」 95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예산의 독립편성·운영: 「국가재정법」 97
[농림·-	수산·식품]
29.	채소류 수급안정 사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산업·	중소기업·에너지]
31.	탄가안정대책보조사업의 폐지 검토 필요:「석탄산업법」 105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법정부담금 요율 인하:「전기사업법」 10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재정지원 조정:「전기사업법」,「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09
[보건-	복지·고용]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한시적 지원 조항 폐지:「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115 사회보험통합징수 출연금 분담 기준 마련:「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118

35.	자활사업 대상별 사업목표 명확화 및 사업계획 수립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22
36.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 개선: 「국민연금법」 124
37.	통합사례관리사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27
38.	뇌연구 활성화에 필요한 근거 마련: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129
39.	고용보험기금 사업 확대의 시행령 위임조항 개선:「고용보험법」131
40.	단시간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 채용에 관한 정보 제공:「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5
41.	산재보험 재정계산 규정 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137
42.	산업재해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139
[환경]	
42	수생태계 건강성 보전방안 재정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14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 저가하도급 예방 및 거짓 부실 평가시 재평가
44.	실시 근거 마런:「환경영향평가법」 145
	[43] [2기 타인: 선경 6 8 8 7 월] **********************************
[SOC]	
[3OC]	
45.	대건설 장기계획 국회 제출: 「대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51
46.	통행료 수입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고속도로 등에 대한 통행료
	25 26 56
	차등 적용: 「유료도로법」153

# 재정건전성 확보

### 1. 행정입법 비용추계서의 국회 제출

### 「국회법」

### 가. 현황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 10일 이내에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안을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함(「국회법」제98조의21))
  - 각 중앙관서의 장은「국가재정법」제87조제2항에 따라 재정수반 법령에 대한 추계 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법령안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음<sup>2</sup>

김월래 예산분석관(02-788-3740, dewywine@assembly.go.kr)

- 1) 「국회법」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전문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2) 「국가재정법」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 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 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의 변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 나. 문제점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수반 법령에 대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법령안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국회에는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행정입법 비용추계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법률 조문은 대부분 일반적, 추상적, 포괄적이어서 세부적·기술적 규정까지 명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러한 조문을 근거로 법안의 비용을 추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적 제약이 있음
  - 하위 법령에 지원내용과 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워 비용추계서 미첨부 비율이 높음

### 다. 개선방안

- □ 재정이 수반되는 법률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제정 또는 개정하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때 그 비용추계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법안비용추계서의 부대의견에 위임규정에 따라 하위규정에서 발생할 비용의 유무를 명시하고, 법안 심사보고서에도 이를 명시함으로써 법안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의 활용도를 높임
  - ㅇ 행정입법에 따른 비용추계가 국회의 입법취지에 부합한 비용추계인지를 점검할 수 있음
  -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법률 시행에 따른 예산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시 비용추계서의 정보를 활용함
  - ㅇ 정부의 추계정보를 국회와 공유함으로써 비용추계의 투명성과 품질을 제고함

#### 4 · nabo

### 라. 조문대비표

### 「국회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 등) 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 등) ①
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u>입법예고안</u> 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 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 정기관이 제출한 <u>대통령령·총리령 및 부</u> <u>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 다)에</u>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 토하여 당해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입법예고안(예산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후단의 추계 서를 포함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국회 재정통제 강화

## 2. 수시배정 예산배정내역의 분기별 국회 제출 「국가재정법」

### 가. 현황

- □ 예산의 수시배정제도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임(「국가재정법」제43조제4항¹))
  -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수시배정사업 지정기준으로 사업의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법률 제·개정 협의 등의 조건이 충족된 후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 당초 사업 여건이 변경되어 점검이 필요한 사업, 효율적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 등 4가지 유형 제시

### 나. 문제점

- □ 예산의 수시배정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배정을 유보함으로써 국회에 서 확정된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수 있음
  - 2014년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된 225개 사업 중 국회 증액사업은 136개 사업으로 사업 수 기준 전체 수시배정 사업의 60.4%

심지헌 예산분석관(02-788-4625, sjh0125@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4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2015.7. pp.26~30 참조 동일 취지의 개정법률안 1건이 제19대 국회에 발의되었음.

<sup>1) 「</sup>국가재정법」제43조(예산의 배정) ④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수시배정은 사업의 시행여부·시행시기 및 사업금액을 기획재정부가 재심사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가 수시배정대상사업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일부만 배정할 경우 국회의 재정의도를 왜곡할 위험

### 다. 개선방안

□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시배정 예산 배정 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라. 조문대비표

#### 「국가재정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예산의 배정내역을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대상 사업 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의미한다)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3. 현물출자의 국회 사전동의 필요 「국가재정법」

### 가. 현황

- □ "현물출자"는 행정재산 이외의 일반재산을 현물로 정부출자기업체에 자본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현행「국가재정법」은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하도록 규정함
  - 「국가재정법」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음

### 나. 문제점

- □ 현물출자도 출자의 대상이 현물이라는 점 외에 현금출자와 큰 차이가 없으나 국회의 사전통제를 받지 않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현물출자가 세입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보유 자산(주식, SOC관리권 등)을 등가의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국유재산 교환)으로, 새로운 국민 부담(歲入)이 없으며 재산가액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
  - 그러나 출자가 완료된 시점에서 현물출자는 현금출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심지헌 예산분석관(02-788-4625, sjh0125@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2015.7. pp.26~30 참조

동일 취지의 개정법률안 1건이 제19대 국회에 발의되었음.

- 현금출자도 국유재산의 구성이 현금에서 지분증권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현물출자와 차이가 없으며, 한번 출자하면 출자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기 전에는 출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음
- ㅇ 우리나라처럼 일반법으로 자본금 확충 등을 위하여 현물출자를 인정하는 해외사례 부재
  - 외국의 경우 현물출자제도가 없거나, 정부조직을 공기업화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법을 근거로 현물출자한 사례(독일, 폴란드), 개별법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관과 관련된 현물재산을 출자하는 사례(일본)만 존재
- 현재 현물출자는 정부의 내부적인 의사결정만으로 출자가 이루어지나, 자본금 확충을 위한 현물출자의 경우 현금출자와 그 효과가 사실상 동일하고, 현물출자의 규모가 매우 커¹) 재정통제가 필요

#### 다. 개선방안

□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 현물출자 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게 하는 통제방안 검토 필요

#### 라. 조문대비표

#### 「국가재정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생 략)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 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②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u>〈단서</u>	<u>다만,</u>
<u>신설〉</u>	<u>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u>
	<u>의를 받아야 한다.</u>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sup>1)</sup> 연도별 출자규모에 차이가 있으나 2009년에는 15.6조원 규모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는 등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 있음.

#### 12 • nabo

# 4.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국회 제출범위 확대 「국가재정법」

### 가. 현황

□ 「국가재정법」제70조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금융성 기금의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그 외의 기금의 경우에는 20% 이하의 범위에서 자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1)

### 나. 문제점

□ 기금운용계획의 자체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여 사업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30%와 20%라는 기준이 설정된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채미강 예산분석관(02-788-4640, river@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09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I」, 2010. 7. p.345 참조 동일취지의 개정법률안 1건이 제19대 국회에 발의되었음.

<sup>1) 「</sup>국가재정법」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 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 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 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sup>1.</sup>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sup>2.</sup>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2009년 국민주택기금은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1300)항의 당초 지출계획액
 4조 1,688억원 중 8,312억원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율 기준으로는 당초 지출계획액의 19.9%에 해당하여 국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바 있음

### 다. 개선방안

□ 정률 기준을 현행보다 하향 조정하고, 변경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도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라. 조문대비표

#### 「국가재정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② (생 략)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	③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		
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u></u> <u>다만, 제1호 및 제2호에</u>	
	<u>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액이 ○○○</u>	
	<u>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	1	
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u>10분</u>	<u>10분</u>	
<u>의 2이하</u>	의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	2	
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u>10분의 3이하.</u>	<u>10분의 ○이하.</u>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		
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		
여는 <u>10분의 2이하</u> 로 한다.	<u>10분의 ○이하</u> 로 한다.	
3.~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 5.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 가. 현황

□ 현재 예비비는 총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결과를 총괄명세서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국가재정법」제52조제4항¹))

### 나. 문제점

- □ 국회의 경우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사후 승인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어서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한 파악은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음
- □ 국회가 정부의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보다 적시성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중에도 예비비 집행계획에 대한 내역을 보고받고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 개선방안

□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여은구 예산분석관(02-788-4742, cecil@assembly.go.kr) 동일취지의 개정법률안 1건이 제19대 국회에 발의되었음.

<sup>1) 「</sup>국가재정법」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 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라. 조문대비표

### 「국가재정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 ~ ③ (생략)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 ① ~ ③ (현 행과 같음)	
<u>〈신 설〉</u>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④ (생 략)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6. 국고보조금 지급대상과 기준보조율을 법률로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가. 현황

- □ 현행 법률체계상 국고보조사업 대상선정과 대상사업별 기준보조율의 조정은 개별 법률 개정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의해 모두 가능
  - 2014년 말 사회복지 관련 법률(「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등)의 개정에 의해 영유아보육료와 기초연금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인상된 바 있음
  - 현행「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고보조사업의 대상과 국고보조율을 시행령 별표로 규정

### 나. 문제점

- □ 법령에 기준보조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국고보조사업 과다
  - 2015년도 예산 상 지자체 보조사업(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은 세부사업 기준 총 814 개에 달하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121개 유형의 사업에 대해서 만 기준보조율을 명기하고 있음
  - 대규모 지방재정부담을 야기하는 사업일수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에 기준보조율을 명기할 필요성이 크나 그렇지 못한 사례가 발생
    - 2015년도 기준 대응지방비 예산규모 1,000억원 이상 42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9개 사업의 기준보조율이 보조금법 시행령 또는 관련 개별 법령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이들 사업이 수반하는 지방재정 부담규모는 총 1.7조원에 달함

김경수 예산분석관(02-788-4643, gskim01@assembly.go.kr)

- □ 기준보조율 조정을 개별 법률로 규정하는 현재의 법률 체계는 중앙의 국고보 조금 재원관리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큼
  - 개별 법률로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게 되면, 여타 재정사업 관련 법률에 국고보조율을
     상향시키려는 법률안들이 발의될 가능성이 큼

#### 다. 개선방안

- □ 현행「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사 업과 기준보조율을 법률로 규정하고 타법 개정 불가 명시
  - ㅇ 현행「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을 법률 [별표 1]로 상향규정
- □ 국고보조금 총액관리 원칙의 준용
  - 국고보조금에 대한 중앙 차원에서의 총액관리를 위해 각 개별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과 기준보조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 [별표 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9조 단서 관련) 신설

#### 라. 조문대비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의 견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		
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u>〈단서 신설〉</u>	<u>다만,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 법 별</u>	
	표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u>없으며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u>	
	<u>없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의 견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 등) ① -----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u>다음 각 호에 해당하</u> -----보조금이 지급되는 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상 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 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 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u>〈삭 제〉</u>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삭 제〉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 재정정보 투명성 제고

# 7. 예산총칙에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의 차입금·채권발행 한도액 적시 필요 「국가재정법」

### 가. 현황

- □ 국가의 세출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은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함(「국가재정법」제20조제1항¹))
  - 국가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국채·차입금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음(「국가재정법」제18조)²)
  - 이러한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은 「국가재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하나, 기금의 경우 동 조항 및 「국가재정법」제68조에 의해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으로 한정되어 있음3)4)

윤주철 예산분석관(02-788-3737, yjc@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5년도 예산안 거시·총량 분석」, 2014. 10. pp.103~129 참조

줄저: 국회예산성잭저, '2015년도 예산안 거시·종량 문석」, 2014. 10. pp.103~129 잠조

- 1) 「국가재정법」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 2) 「국가재정법」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외국정부·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 3) 「국가재정법」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 정부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 4) 2016년 기준 65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은 공무원연금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22개이다.

### 나. 문제점

- □ 국회가 전체 회계·기금의 차입금과 채권 발행한도를 총괄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의 채무는 현행 국가채무(D1)에 포함되지 않
     으나 일반정부 부채(D2)에는 포함됨5)
    - 2016년도 예산 기준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의 차입금은 151억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조 2,826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조 4,000억원 등

### 다. 개선방안

□ 국회가 전체 회계·기금의 차입금과 채권 발행한도를 총괄적으로 파악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의 차입금·채권발행 한도액도 예산총칙에 적시할 필요가 있음

<sup>5)</sup>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제91조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이러한 채무 개념은 중장기(5개년) 국가채무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시 활용된다. 그러나 일반정부 부채(D2)는 국제지침 등을 고려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중앙 및 지방의 회계·기금뿐만 아니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므로 국가 간 재정 건전성 비교 시 활용된다.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2014. 9.

### 라. 조문대비표

#### 「국가재정법」

### 현 행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

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 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 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 정부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 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 개 정 의 견

-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 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 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 입금의 한도액(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 정부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 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 8. 예산안 첨부서류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에 예산안 적시 필요

### 「국가재정법」

#### 가. 현황

- □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 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을 첨부하여야 함(「국가재정법」제34조1))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은 2015년도 예산안 제출시부터 첨부됨
  - 정부는 「201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각각에 대해 2014 년까지의 연부액, 2015년 예산, 2016년 이후의 지출예정액을 적시함
    - 참고로, 「201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각 사업의 2013년까지의 연부액, 2014년 이후의 지출예정액이 적시되어 있었음

윤주철 예산분석관(02-788-3737, yjc@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5년도 예산안 거시·총량 분석」, 2014. 10. pp.103~129 참조

<sup>1) 「</sup>국가재정법」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sup>1~3.</sup> 생략

<sup>3</sup>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예시: 경찰대학교 이전)

(단위: 백만원)

#### 1) 201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3) 해당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연도 이후의 지출 예정액			
총사업비 '13년까지의 연부액		'14년 이후 지출 예정액	
315,031	114,077	200,954	

#### 2) 201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3) 해당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연도 이후의 지출 예정액			
총사업비	'14년까지의 연부액	'15년 예산	'16년 이후 지출 예정액
319,973	190,575	79,942	49,456

자료: 대한민국정부, 「예산안 첨부서류」, 각년도

### 나. 문제점

-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예산연도의 예산안을 파악할 수 없음2)
  - 「201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를 통해서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2016년도 예산 안 규모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다. 개선방안

-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첨부되는 서류임을 고려할 때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예산안을 별도로 적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201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각각에 대해
     2016년까지의 연부액, 2017년 예산안, 2018년 이후의 지출예정액을 적시

<sup>2)</sup> 여기에서 예산연도는 정부가 t년도에 국회에 제출하는 「(t+1)년도 예산안」의 경우 (t+1)년도를 의미한다.

### 라. 조문대비표

### 「국가재정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3. (생 략)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3. (생 략)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연도까지의 연부액, 예산안 및 다음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 9.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시 재정정보의 공개 「국가재정법」

### 가. 현황

- □ 정부는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 관점에서 거시적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제고 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 주요 내용으로 경제·재정운용 여건, 중기 재정운용 목표, 재정전망(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등을 포함
- □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기 재정총량지표를 세분화하여 제시하도 록 2010년에 「국가재정법」제7조제2항1)을 개정함
  - 재정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재정수입은 세입,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으로 구분

조은영 경제분석관(02-788-4841, dolkongs@assembly.go.kr)

1) 「국가재정법」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 2. 중·장기 재정전망
-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4의4.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 6.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7. · 8. (생략)

### 나. 문제점

-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기 경제성장률이 낙관적으로 전망되면서 세입예산이 과대 계상되었고 세입결손이 발생하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신뢰성과 실효성 이 저해되는 요인이 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예산연도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이 실적에 비해 높게 책정되면서 세 차례에 걸쳐 국세수입이 결손됨
    -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실적(GDP 대비 %): (°10) 4.0/6.3 → (°11) 5내외/3.7 →
       (°12) 4중반/2.0 → (°13) 4초중반/2.9 → (°14) 3.7/3.3
    - 국세수입 결손(조원): ('12) -2.8 → ('13) -8.5 → ('14) -10.9
- □ 정부는 2014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경제성장률을 제시하였으나 2015년에 는 이마저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전망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정부는 2009년까지 5년간의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제시하였으나 2010~2013
     년 동안에는 대략적인 실질성장률만을 제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이마저도 명시하지 않음

#### 다. 개선방안

- □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시 재정수입·재정지출·수지·국가채무 산출의 전제로 사용되는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의 제시 필요
  - EU회원국이 EU집행위원회에 중기재정운용계획 (The stability and convergence programmes, 안정 및 수렴보고서) 제출 시 경제성장률(명목 및 실질), 가격변수 (GDP 디플레이터, CPI), 고용변수(취업자수, 실업자수, 임금), 재정수입·재정지출·수지·부채, 전년도 전망치와의 비교 등을 포함²)

<sup>2)</sup>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015.10. p.123

### 라. 조문대비표

### 「국가재정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2. 중·장기 재정전망</u>	<u>2. 중·장기 재정전망 및 그 근거</u>
3.~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 10.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응지방비 현황 포함 필요 「국가재정법」

### 가. 현황

□ 현재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나. 문제점

- □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 따른 대응지방비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예산안 심의 시 이를 함께 심사할 수 없는 실정임
- □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이 지방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대응지방비 부담의 적절성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다. 개선방안

- □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을 예산 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지방재정부담에 대하여 국회가 심의하고, 중앙과 지방 간 재정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이종민 사업평가관(02-788-4671, intel@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2014. 11. p.63 참조

# 라. 조문대비표

### 「국가재정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15.(생 략) 〈신 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15. (현행과 같음)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

# 11. 대상과 단가로 구분된 의무지출 산출내역 국회 제출 「국가재정법」

#### 가. 현황

- □ 의무지출은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 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을 말함(「국가개정법」제7조제2항제4의2호)
  - 기획재정부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주요 의무지출에 대한 전망 및 산출내역
     을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6.1%)을 감안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재량지출 증가율을 -0.7%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

#### 나. 문제점

-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의무지출에 대한 연도별 총액과 증가율만 을 제공하고 있어, 의무지출 전망결과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
  - 법령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은 국회의 법령 심사를 통하여 지출 통제가 필요한 재정지출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산출내역 없이 분야별 또는 사업별 총액 으로 의무지출 규모 및 증가율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김태완 예산분석관(02-788-4649, tanzania@assembly.go.kr)

### 다. 개선방안

□ 의무지출 전망결과를 국회에서 검토 가능하도록 의무지출 산출내역을 대상과 단가로 구분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음

### 라. 조문대비표

#### 「국가재정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4의2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	
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	
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의 증가율 및 <u>산출내역</u>	산출내역(대상과 단가를 포함한다)
③~ ⑩ (생 략)	③~⑩ (현행과 같음)

# 12. 예산안편성지침에 부처별 지출한도 포함 「국가재정법」

#### 가. 현황

- □ 현행 법률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예산안편성지 침에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국가재정법」제29조¹))
  -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 한도를 포함하여 국회에 보고한 경험은 없음
  - 또한 현행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예산안 총액과의 차이 발생 여부, 그리고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규정이 없음(「국가재정법」제34조²))

이진우 예산분석관(02-788-4740, jwlee@assembly.go.kr) 동일취지의 개정법률안 1건이 제19대 국회에 발의되었음.

- 1) 「국가재정법」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 2) 「국가재정법」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 4. 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
  -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 정액과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 나. 문제점

- □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국회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에 제약
  - 재정지출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 등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의 사전적인 예산안 심의와 경제 및 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
- □ 예산안편성지침이 예산 및 재정운용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예산안 심의·확 정단계에서 이를 바로잡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예산안 총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한 합리성 및 불가피성을 향후 국가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

#### 다. 개선방안

□ 「국가재정법」제29조제2항의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제34조에 중 앙관서별 지출한도와 예산안 총액의 차이 발생 여부 및 그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sup>7.</sup>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sup>8.</sup>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sup>9.</sup> 성인지 예산서

<sup>10. 「</sup>조세특례제한법」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sup>11.</sup>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당해 기관의 장의 의견

<sup>12.</sup> 삭제<2010.5.17>

<sup>13.</sup>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sup>14. 「</sup>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sup>15.</sup>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 라. 조문대비표

### 「국가재정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 (생 략)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②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	
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	
<u>할 수 있다.</u>	<u>하여야 한다.</u>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제33조의 규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u>〈신 설〉</u>	16.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관서
	별 지출한도와 예산안 총액과의 차이
	<u>및 그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u>

#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

# 13.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 요구 시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기간 보장 필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가. 현 황

- □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¹))
  - 지방재정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 예산안 편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임
- □ 이와 관련, 현행「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은 각 중앙관서가 기획 재정부에 예산안요구서를 제출하기 10일 전인 5월 20일까지 협의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나. 문제점

□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의 내실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서는 행정자치부가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 예산요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어야 함

유항재 사업평가관(02-788-4672, woodoff@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2014. 11. pp.59~60 참조

동일취지의 개정법률안 1건이 제19대 국회에 발의되었음. (의안번호1912488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sup>1) 「</sup>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한다.

□ 그러나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앙관서에서 협의종료기한(5월 20일) 이 후에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자치부가 협의 요청사항을 검토할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협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다. 개선방안

- □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 예산요구안에 대한 내실 있는 협의가 이루 어지도록 하기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시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에 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하는 점을 감안하여, 협의 요청 시한을 5월 10일로 설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최소 10일 의 협의기간을 보장하도록 함

### 라. 조문대비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의 견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중앙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	
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u>행</u>	<u>해당 회계연도의</u>
정자치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	<u>전년도 5월 1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u>
<u>의하여야 한다.</u>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u>한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분야별 개선과제

R&D

# 14. 국가R&D과제 기획·선정 평가의 공정성 강화 「과학기술기본법」

#### 가. 현황

- □ 국가연구개발(R&D)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R&D과제를 특정하고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R&D사업을 말함(「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1호1))
  - 국가R&D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사업 추진근거를 명시하고,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①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연구환경 조성, 연구자율성 확보, 성과확산 및 실용화, ② 투명·공정·효율적인 사업기획, 과제 선정, 결과평가 및 활용, ③ 사업집행을 대행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나. 문제점

□ 최근 국가R&D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비리는 그 수법 이 지능화되는 한편 과제의 기획·선정단계에서 조직적인 사전담합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사후통제 중심의 대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임길환 사업평가관(02-788-4677, ghlim@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국가R&D 정책 평가」, 2015. 10. pp.55~64 참조 동일취지의 개정법률안 1건이 제19대 국회에 발의되었음.

<sup>1) 「</sup>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정의)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 현행「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국가R&D과제 평가위원 선정시 이해관계자를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R&D집행부처의 하위규정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지 않음?)
- 실제 국가R&D과제의 기획·선정 단계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자가 직접 또는 소속기관을 통해 해당 R&D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셀프과제" 비율이 약 6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다. 개선방안

□ 국가R&D사업의 공통규범으로서 지위가 취약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국가R&D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신설하여 평가단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라. 조문대비표

「과학기술기본법」

1 1 1	= 100-
현 행	개 정 의 견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④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④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
	<u>과제를 기획·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u>
	<u>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u>
	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이해관계자를 평가단에서 제외
	<u>하여야 한다.</u>
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⑥
여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u>사항과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u>	<u>사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위원단 구성·</u>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sup>2) 「</sup>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10항 및 관련 별표 1 참조.

48 • nabo

# 15. 국가 R&D 사업 관리 규정의 법률화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가. 현황

- □ 국가 R&D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공통규정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음
  - 국가 R&D사업의 법령체계는 헌법 제127조에 근거하여「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서 국가 R&D 사업 추진의 목적・방향 등을 명시하고, 국가 R&D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전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R&D 집행부처는 동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R&D사업의 관리 등을 위한 세부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각 부처는 소관 R&D사업 추진에 근거 가 되는 법률을 근거로 175개에 이르는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문제점

- □ 동 규정은 국가 R&D사업의 추진을 위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 R&D 사업의 공통기준과 부처별 R&D사업의 규정이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음. 대부분의 R&D 집행부처는 동 규정 중 일부만을 준용하고, 기본적인 사업관리, 기술료지적재산권과 같은 R&D 성과의 활용 등에서는 상이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한 예로 국가R&D사업의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을 결정하는 세부기준이 부처마다 다르

김안나 예산분석관(02-788-4650, ankim@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경제·산업)」, 2014. 07. pp.48~49 참조

고,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도 부처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행정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대통령령인 동 규정과 달리, 국가 R&D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활용을 규율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법률로 제정되어 R&D 집행부처의 R&D 사업성과평가관리 규정과의 부정합성 또는 적용 우선순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

#### 다. 개선방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화하며, 각 부처의 개별 법 령과 행정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중복적인 규정체제를 정비하고, 규정 적용의 우선순위와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정비가 필요함

# 16. 기금자금의 목적 외 사용 시 환수규정 마련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가. 현황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환수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임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ICT기금 사업관리 지침(훈령)」에 따라 전담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사업비를 환수하고 있음
  - 사업비 환수 조치는 협약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위로써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ICT기금 사업관리 지침」만으로 실효성 있는 환수 조치가 이루 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

#### 나. 문제점

□ 보조사업을 제외한 非R&D사업의 경우 R&D사업과 달리 목적 외로 사용된 사업비 환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일반법이 없으므로, 환수 처분을 위해서 는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1)

윤성식 예산분석관(02-788-4666, yoons@assembly.go.kr)

출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6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5. 10. pp.160~161 참조

<sup>1)</sup>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R&D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문제 과제에 대한 환수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연구비 환수조치가 가능함.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 조치는 낭비된 국고 지출을 회복하는 한편 사업 수
 행기관의 부적절한 집행을 억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재 수단임

#### 다. 개선방안

- □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이 기금 목적에 적합한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부적 정한 사업비 집행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환수 근 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목적 외 사용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2)

#### 라. 조문대비표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 정 의 견
제26조(기금의 용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sup>2) 「</sup>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4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17. 소프트웨어 취약점 신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 현황

- □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이버 보안위협 예방체계 구축' 사업1)은 출연을 통해 소프 트웨어 보안 취약점 신고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함
  - 동 사업에서는 국내 소프트웨어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보안 취약점을 찾아 신고 한 사람에게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금을 통해 신고보상금 지급
  - 형식적인 신고보상금 지급 주체는 인터넷진흥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가 인터넷 진흥원을 매개로 출연사업을 실시하면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함

### 나. 문제점

- □ 신고보상금(또는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 방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국민의 신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보상금·포상금·상금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서,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
  -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신고보상금을 훈령, 지침
     에 따라 지급하는 등 법령상 근거가 미약한 경우에는 법령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함

심예원 예산분석관(02-788-4631, ywshim@assembly.go.kr)

<sup>1) 2015</sup>년까지 동 사업명으로 수행되다가, 2016년부터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통합

### 다. 개선방안

- □ '사이버 보안위협 예방체계 구축' 사업에서 지급하는 신고보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 조에 신고보상금 제도의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라. 조문대비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의 견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 ~ ④ (생 략)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인터넷진흥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에 대해 그 보안상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u>있다</u> .
⑤ ~ ⑦ (생 략)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문화·체육·관광

# 18.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배분비율 관련 규정 정비 「국민체육진홍법」

#### 가. 현황

-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전액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되도록 법령이 개정 되었으나, 투표권 수익금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은 정비되지 않았음
  - 법률에서 체육진흥투표권으로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비율에 대해 일부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사업별 배분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나. 문제점

- □ 국회의 기금심사·확정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기금계획안 작성 및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재량권도 제약하고 있음. 또한 기금 전체의 효율적인 재원배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법령에 투표권수익금의 일정비율을 특정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회의 기금심사과정에서 이를 변경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정부 역시 실적점검과 성과평가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 등에 따라 예산 규모를 조정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일정비율이 특정사업에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전체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 측면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기금의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추구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유규영 사업평가관(02-788-4835, ryu@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2015. 6. pp.355~357 참조

□ 투표권 수익금의 특정비율이 사용되는 사업들과 타 기금사업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나,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다. 개선방안

□ 현행 투표권 수익금의 특정비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투표권 수익 금의 분배비율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타 기금사업과 동일한 규율 체계로 규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라. 조문대비표

#### 「국민체육진흥법」

현 행	개 정 의 견
2 8	계정의전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1. ~ 12. (생 략)	1.~12. (현행과 같음)
<u> </u>	1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
<u> </u>	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기금
	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 </u>	1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u>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u>
	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u>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u>
	지원. 이 경우 지원 대상사업은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1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문화예
	술 사업의 지원
	<u>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u>

현 행	개 정 의 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	나.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다. 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라. 체육·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마.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바.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 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삭 제〉
한 시기형에도 불구하고 제29호제2형에 따라 기금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기금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이경우 지원 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나.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다. 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다. 세육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다. 제육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다.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다. 무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다. 기원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	
<u>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u> ③·④ (생 략)	②·③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교 육

### 19.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가. 현황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 함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1))
  -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제1항 각호에 따라 ①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②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 ③ 재해대책수요에 대해 교부
  - 동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 가능

정수현 예산분석관(02-788-4633, shjeong@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2015. 10. p.13 참조 동일취지의 개정법률안 11건이 제19대 국회에 발의되었음.

<sup>1) 「</sup>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sup>1.</sup> 삭제

<sup>2.</sup>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sup>3.</sup>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나. 문제점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본적으로 부족한 지방교육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부 사용목적은 시·도교육청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교부금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특별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목적을 한정하는 특별교부금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 특별교부금이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크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
  - 현행법은 보통교부금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 관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교부금의 집행내역에 관하여는 국회 보고 절차가 마련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료만 제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국회의 재정통제가 미흡
- □ 재해대책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의 본래 취지를 달성 하지 못하는 등 재해대책비의 활용에 문제점이 있음
  - 2011~2013년까지 매년 재해복구 목적 집행률이 5.5%, 2.1%, 1.9%에 불과함. 2014 년에는 17.0%, 2015년에는 20.5%로 비율이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본래 목적인 재 해복구로 사용되는 비율이 저조하고 잔액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사용 되는 문제

#### 다. 개선방안

□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해당 금액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축소하고, 보통교부금의 규모는 100분의 96에서 100분의 97로 확대할 필요

- □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집행내역 등 특별교부금의 운용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특별 교부금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대책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라. 조문대비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 ② (생 략)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普通交付金의 財源은 제2항제3호의 規定에 의한 금액에 同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 액을 合한 금액으로 하고, 特別交付金의 財源은 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금액 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 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1. · 2. (현행과 같음)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u>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u> <u>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u>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의 견
제12조(보통교부금의 보고) 교육부장관은	제12조(교부금의 보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의 배분기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
<u>준·배분내역·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u>	<u>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u>	<u>1.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역·배</u>
<u>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u>
	<u>요한 주요사항</u>
	2.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집행내역

<sup>※</sup> 개정의견의 배분비율은 예시이고, 심의과정에서 내국세수입과 지방재정현황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외교·통일

# 20. 재외공관용 미술품 처분 절차 및 처분 수입금 국고납입 제도 마련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 가. 현황

-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운용·유지·보존·임차와 국외 일반재산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관리와 외교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유재산법」의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재외공관용 국유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고, 처분 수입금에 대해서는 사용 범위 및 국고 납입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음(「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 제3조1))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sup>1) 「</sup>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부동산의 처분) ①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 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공관지역 내의 일체의 부동산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영사관사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재외공관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용도폐지한 후 「국유재산법」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수입금은 「국유재산법」제26조의3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이 된다. 제3조(자동차의 교환·처분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적정한 가격의 유지 또는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하거나 처분하고, 그 대금을 그 회계연도에만 다른 자동차의 매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처분한 대금으로 다른 자동차를 매입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으로

#### 나. 문제점

- □ 국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에 있어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하여 는 처분절차와 처분 수입금의 국고납입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 상 일반재산에 속하는 미술품에 관하여는 국외 일반재산에 포함하여 관리·처분 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미술품을 본부에서 구입하여 재외공관으로 송부하고 2015년
     9월 현재 재외공관에 3,894점의 미술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미술품이 「재외 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2)에 근거하여 처분되는 경우 그 수입금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공관이 직접사 용하게 됨
  - 또한「국가회계법」및「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에 따르면 유산 자산은 결산 재무제표에 표시하여 필수보충정보로 공시되어야 함에도 재외공관 미 술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되고 있음
  - 따라서 재외공관 미술품은 문화유산적 가치를 반영한 국유재산 및 국고금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다. 개선방안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재외공 관용 자동차 처분의 예와 같이 국유재산인 미술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 차에 따라 처분하고 그 수입금 중 사용은 미술품 구입에 사용 후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술품에 대한 국유재산 및 국고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sup>2) 「</sup>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외교부장관은 「국 유재산법」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있는 일반재산을 관리(취득은 제외한다)하거나 처분한다.

# 라. 조문대비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현 행	개 정 의 견
⟨신 설〉	제3조의2(미술품의 교환·처분 등) ① 외교부 장관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외공관용 미술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하거나 처분하고, 그 대금을 그 회계 연도에만 다른 미술품의 매입을 위하여 직 접 사용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용 미술품을 처분한 대금으로 다른 미술품을 매입한 후 남은 금액이 있 는 경우에는 세입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 된 예산의 범위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 21.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기금화 「한국국제협력단법」

#### 가. 현황

-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외교부 대행으로 국내공항을 출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1,000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하여, 이를 개도국의 빈곤 및 질병 퇴치에 사용하고 있음(「한국국제협력단법」제15조 및 제18조의2<sup>1</sup>))
  - 2007년 9월 30일에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도입된 후, 2012년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되어 2017년 9월 종료 예정
  - o 2015년에 269억원의 수입 중 238억원을 지출하여 31억원의 잔액이 발생

조가영 예산분석관(02-788-4642, gycho@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회계연도 결산 분석」, 2014. 7. pp.304~306 참조

1) 「한국국제협력단법」제15조(운영 재원)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이 경우 제3호 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 2.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 3. 제18조의2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
- 4. 그 밖의 수입금

제18조의2(국제빈곤퇴치기여금) ① 외교부장관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승무원·환승객·영유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외교부장관은 기여금의 부과·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협력단은 외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여금을 관리·운용한다. 이 경우 기여금은 다른 운영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④ 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빈곤 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된다.
- ⑥ 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조성액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조성액(A) <sup>1)</sup>	지출액(B)	잔액(A-B)
2007	3,114	-	3,114
2008	14,056	9,124	4,932
2009	13,641	12,085	1,556
2010	16,717	15,053	1,664
2011	17,785	12,898	4,887
2012	20,049	13,265	6,784
2013	21,496	10,291	11,205
2014	24,437	9,699	14,738
2015	26,870	23,783	3,087
합 계	158,165	106,198	51,967

조성액 = 징수액 + 이자

#### 나. 문제점

- □ 「국가재정법」제17조는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교부가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부담금을 세입·세출 외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 현재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한국국제협력단의 별도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기여금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은 외교부 대행이므로 실질적인 관리주체는 외교부이며, 기여금은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여금의 지출에 대해서 국회의 심의 필요

#### 다. 개선방안

-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영구화함과 동시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기금화하고, 동 기금을 한국국제협력단이 관리·운용하도록 함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되, 국제빈곤퇴치기금운
     용심의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함
  - 현행법 상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은 국제빈곤퇴치기금운용심의회에서 담당하게 하므로, 관련 조항인「한국국제협력단법」제18조의2 제5항과 제6항을 삭제함
-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국회 보고 조항 삭제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제3조 별표에 의해 설치되는 부담금으로, 동법 제6조의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와 제6조의3(부담금운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에 따라 국회제출 의무가 있음2)
  - 기금화됨에 따라「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운용 성과의 국회 보고 의무가 추가되므로、「한국국제협력단법」제18조의3 삭제

<sup>2) 「</sup>부담금관리기본법」제6조의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 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계획서 및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 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라. 조문대비표

### 「한국국제협력단법」

혀 행	개 정 의 견
제18조의2(국제빈곤퇴치기여금) ① ~ ③ (생 략)	제18조의2(국제빈곤퇴치기여금)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u>관한 주요</u>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 부장관이 된다.	<u>〈삭 제〉</u>
⑥ 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삭 제〉</u>
제18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외교부장관은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심의결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u>〈삭 제〉</u>
<u>〈신 설〉</u>	제18조의4(국제빈곤퇴치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개발도상국가의 빈곤·질병퇴치를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하여 협력단에 국제빈곤퇴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및 기부금 2. 제18조의2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3.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의 견
(신 설)	제18조의5(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국제빈곤퇴치기금운 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정책 2. 「국가재정법」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제8조제3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경산보고서의 작성 5. 「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 지침의 제정 및 개정 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외교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된다.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 방

# 22.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가. 현황

- □ 기부 대 양여사업이란 이전대상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 된 이전시설물을 양여하는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 방식임(「국방·군 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¹))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은 ① 지방자치단체 등이 민원 해소 등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을 제안하는 경우, ② 국방·군 사시설이 공익사업 지구 내에 편입되는 등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③ 그 밖에 국 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으로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2012년부터 2015년말까지 25건, 1조 8,846억원 규모의 기부 대 양여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5년말 현재 59건, 5조 8,188억원 규모의 기부 대 양여사업이 진행 중임2

# 나. 문제점

□ 기부 대 양여사업은 국유재산 가치의 큰 변동을 초래하나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가 미흡함

강건희 예산분석관(02-788-4639, newacts@assembly.go.kr) 출처: 「국방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014.

<sup>1) 「</sup>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 자는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유지 또는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sup>2)</sup> 기부재산 평가금액 기준

- 기부 대 양여사업은 기부자와 양여자간 협의에 따라 직접 현물거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 등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제22조는 국방부장관이 기부 대 양여사업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합의각서가 체결된 사업에 대한 사후적 보고에 불과한 것으로 국회의 사전 적·적극적 통제가 불가능함

#### 다. 개선방안

□ 기부 대 양여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부 대 양여사업은 그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 서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한 국회 통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라. 조문대비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의 견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② (생략) <u>〈신 설〉</u>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추진계획(용도 폐지 될 재산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에 한한다)과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3.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기준 명시 및 지원의 제한 근거 마련

「병역법」

## 가. 현 황

- □ 병무청은 20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이 소집 기간에 부담해야 하는 국민건강보 험료를 지원하고 있음(「병역법」제77조의3)
  -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인 사회복무요원으로, 이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복무중단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 지원받는 인원은 전체 사회복무요원의 30% 수준임
    - 2015년 결산액 30억 8,400만원 / 2016년 예산액 31억 3,900만원

### 나. 문제점

- □ 법률에 명확한 규정 없이 2016년부터 건강보험료 일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것은, 예산으로써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과 한도를 정한 것으로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음
  - 2016년부터 1인당 건강보험료 중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중 단되고, 다른 직업활동을 허가받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 지 않음

현승철 예산분석관(02-788-3739, pearl@assembly.go.kr)

- 법의 위임에 따른 「병역법 시행령」제155조의3은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① 휴직 등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와 ② 지역가입자인 사회복무요원으로 정하고 있어, 특정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1)
- 지원 한도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음

# 다. 개선방안

- □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가 있음
  - 또한, 법률에 건강보험료 지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에 세부적인 제한 기준을 위임함

## 라. 조문대비표

#### 「병역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상 근예비역과 제26조에 따라 소집된 사회복	① (Lāl부모o
무요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u>사회복무요</u> 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u>예산의</u>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u>지원한다.</u>
<u>〈신 설〉</u>	1.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1항에 따른 직
	<u>장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u>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상근예비역 및
	<u>사회복무요원</u>

<sup>1)</sup>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 및 기간) ①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의 견
<u>〈신 설〉</u>	2.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소집이 해제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한다.
	1. 직장가입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 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2.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 69조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
<u>〈신 설〉</u>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험료 지원을 제한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u>지원범위 및 지</u>	④ <u>지원기간과 제</u>
<u>원기간</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3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축소</u>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 일반·지방행정

# 24.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의 법적 근거 마련 「경찰관 직무집행법」

### 가. 현황

- □ 경찰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선거상황실 운영비 및 선거사 범수사경비 등 관련 예산 16억 2,000만원을 「범죄수사역량강화」사업에 편성
  - 각 지방청 및 경찰서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형사·정보 등 합 동으로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여 일상 업무와 동시에 선거사범 첩보 수집 및 단속 을 위한 사업으로 제20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 종료 후 10일까지 총 70일간 구성

# 나. 문제점

- □ 경찰청은 신고보상금을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 령 제746호, 2014.12.1. 일부개정)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 오고 있음
  - 「2016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신고보상금(또는 신고포상금)은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별 자체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 한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제262조의3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주체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이미연 예산분석관(02-788-4646, mylee@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5. 10. pp.94~96 참조 범죄신고 활성화를 위한 조원진의원 대표발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5년 12월 31일 에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6년 1월 27일에 공포되었으나,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없음

로 규정한 것과는 다르게 경찰청장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률에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며, 중복 지급될 가능성이 있음

# 다. 개선방안

□ 경찰청은 금품수수 등 음성적인 선거·정치 자금 범죄 신고 및 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라. 조문대비표

#### 「경찰관 직무집행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11조의3(보상금 지급) ① 경찰청장, 지방	제11조3(보상금 지급) ①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선거사범 또는 선거사범의 소재를 신고하
	<u>여 검거하게 한 사람</u>
<u>4.</u> (생 략)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25.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한도 법률에 규정 「지방공기업법」

### 가. 현황

- □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치·설립된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임
  - 지방직영기업은 상·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구성
  -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하철공사, 도시개발 공사, 기타공사 등으로 구성
- □ 지방공기업은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사채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에 규정(「지 방공기업법」제68조제1항¹))
  -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공기업은 순자산액(총자산 부채)의 4배 이내, 공 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등을 경영하는 공기업은 순자 산액의 2배 이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제2항²))

동일 취지의 개정법률안 1건(의안번호 제1905333호)이 제19대 국회에 발의되었음.

남정희 예산분석관(02-788-4648, koba27@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 재정법률 개선과제」, 2013. 9. pp.67~69 참조

<sup>1) 「</sup>지방공기업법」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up>2) 「</sup>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사채발행) ②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sup>1.</sup>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sup>2.</sup> 제1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2배 이내

# 나. 문제점

- □ 일부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실 발생이 출자자인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여 국가의 잠재적인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
- □ 법률에서 사채발행 한도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가 높아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안정화 제고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주택·토지개발사업의 사채발행 한도를 2013년 12월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 24902호, 2013.12.4)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 다. 개선방안

□ 현재 시행령에 포괄 위임되고 있는 사채발행 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라. 조문대비표

□ 1안: 법률에 한도를 설정(사업별 한도는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 위임)

「지방공기업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지방자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①
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	
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u>대통령령으로</u> 정한다.	<u>순자산액(자산총액에서 부채총</u>
	<u>액을 공제한 액을 말한다)의 ○배 이내에서</u>
	<u>대통령령으로</u>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 2안: 법률에 사업별 한도를 구체적으로 설정

# 「지방공기업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지방자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①
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	
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u>다음 각 호와 같다</u> .
<u>〈신 설〉</u>	1.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u>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u>
	<u>는 순자산액의 ○배 이내</u>
<u>〈신 설〉</u>	2. 제1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
	<u>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배</u>
	<u>이내</u>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26.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 한도제 도입 「지방세특례제한법」

## 가. 현황

-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자체의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지출소요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응하여 지방세 및 지방세외 수입 등 자체수입의 안정적인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 □ 반면에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서 매년 상당한 규모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이루어져 지자체의 안정적인 자체수입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2014년 결산액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61.7조원,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13.1조원
     으로 감면률은 17.5%

#### 연도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현황

(단위: 조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세 징수액	49.2	52.3	53.9	53.8	61.7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14.8	17.3	15.4	16.1	13.1
감면률	23.1	24.9	22.2	23.0	17.5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나. 문제점

□ 대부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중앙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의 정책적 목적으로 시행되어 지자체의 자체수입 확충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를 어렵 게 하고 있음

김경수 예산분석관(02-788-4643, gskim01@assembly.go.kr)

- 2014년 기준 전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13.1조원 중「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제한특례법」등 중앙정부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이 12.9조원으로 전체의 98.9%임
  - 중앙정부에 의한 비과세감면액 중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액의 비중이 93.8%이며, 대부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감면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감면조례 등 지자체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은 0.14조원으로 전체의 1.1%에 불과

#### 2014년 징수액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현황

(단위: 조원, %)

 중	·앙정부에 의한	t 비과세·감면	액	기자체C	게 의한 비과서	l·감면액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제한 특례법	소 계	감면조례	기타	소 계
6.1	5.5	1.3	12.9	0.1	0.04	0.14
			(98.9)			(1.1)

주.괄호안은 전체 비과세감면액 대비 비중임. 자료: 행정자치부, 「2015 지방세통계연감」

#### 다. 개선방안

- □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의 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면비율이 높은 지방세 감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 지방세 감면비율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하여 무분별한 지방세특례에 대해 효과적인 관리
    - 국세의 경우 국세감면비율을 직전 3년간 평균의 +0.5% 이내에서 관리하는 국 세감면비율한도제(「국가재정법」제88조)가 운영되고 있음
  - 각 중앙부처에 의한 지방세 감면시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해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과 그 밖의 필요사항을 지방세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

# 라. 조문대비표

# 「지방세특례제한법」

현 행	개 정 의 견
<u>〈신 설〉</u>	제5조의2(지방세감면의 제한) ① 행정자치 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지방세 수입총액과 지방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지방세 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의 다른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지방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과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7. 소상공인을 포함한 보험목적물 범위의 확대 「풍수해보험법」

### 가. 현 황

- □ 소상공인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액을 살펴보면, 평균 2,839개 업체에서 연평균 543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의연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의연금 등의 경우 피해업체당 100만원씩 소액 지급받는 정도이고,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조건(천만원 이내)으로 이자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자금력이나 재정 기반이 부족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자력복구가 힘든 실정
- □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난지원금 대상 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보험제도가 도입되면 다른 계층의 정부지원 요구가 촉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

# 나. 문제점

□ 농어업인의 경우 풍수해보험(비닐하우스 포함한 농업용·임업용 온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다양한 정책보험상품들에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제외되어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남

이미연 예산분석관(02-788-4646, mylee@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행정안전위·교육과학기술위)」, 2012. 10. pp.220~222 참조 동일취지의 개정법률안 1건이 제19대 국회에 발의되었음.

# 다. 개선방안

- □ 「풍수해보험법」제4조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보험목적 물을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 국민안전처는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재산피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 해 소상공인의 시설물도 보험목적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라. 조문대비표

#### 「풍수해보험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4조(보험목적물)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제4조(보험목적물)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u>같은 조 제2항의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u>
	<u>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기준에 해당하는 업체의 시설물</u>
<u>2.</u> (생 략)	<u>3.</u> (현행 제2호와 같음)

# 28.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예산의 독립편성·운영 「국가재정법」

### 가. 현황

- □ 「국가재정법」제21조제2항은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 로 한 후 소관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행정부가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중앙관서(51개 기관)는 2원(감사원, 국정원), 17부, 3처, 18청, 5실, 그리고 6개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임
- □ 반면 입법부의 경우 국회사무총장만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규정하여 국회 내 독립기관인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예산까지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어 행정부의 독립예산편성 기관과의 균형이 맞지 않음(「국가재정 법」제6조)

# 나. 문제점

□ 예산의 독립편성을 하고 있는 행정부 기관단위와 비교하여 볼 때, 현재와 같이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가 독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기관의 위상에 맞지 아니함

최근성 예산분석관(02-788-3731, naks@assembly.go.kr)

○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 법률에 따라 직무상 독립성을 존중 하도록 하고 있음¹)

# 다. 개선방안

□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도서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도 기관의 위상에 맞게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하여야 함

# 라. 조문대비표

#### 「국가재정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 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 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 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②(현행과 같음)
③ <u>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u> 헌법재 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중앙관서 의 장으로 본다.	③ 국회사무총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 입법조사처장, 국회도서관장, 법원행정처 장,

<sup>1) 「</sup>국회예산정책처법」제2조(지위) ②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법」제2조(지위) ②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

# 29. 채소류 수급안정 사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가. 현황

- □ 정부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있고,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를 위한 농산물 수매 등을 목적으로 기금의 재원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제2항1))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 대상으로 ① 자조금 조성 및 운용을 위한 출연 또는 재정적 지원, ②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를 위한 농산물 수매, ③ 관세법 등에 따라 몰수된 농수산물의 처분, ④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의 출하조절, ⑤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⑥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2015. 10. pp.39~40 참조 동일취지의 개정법률안 1건이 제19대 국회에 발의되었음.

한성진 예산분석관(02-788-4630, hsjin@assembly.go.kr)

<sup>1) 「</sup>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sup>1. 「</sup>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 지원

<sup>2.</sup>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sup>3.</sup>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sup>4.</sup>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sup>5.</sup>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 요하 사업

# 나. 문제점

-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금 재원으로 주요 채소류의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중이나, 기금 재원으로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생산물량을 계약한 농가에게 약정 가격의 일부를 보전 (약정 가격의 15% 수준을 기본적립금으로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 적립금은 정부·지자체·농협·농업인이 부담)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원으로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기금의 용도)에 지 출의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하나, 법적 근거가 미비

#### 다. 개선방안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원으로 채소류 수급안정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라. 조문대비표

#### 「국가재정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제57조(기금의 용도) ①(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②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4의2. 배추, 양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주요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안정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생 략)	5.(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30. 탄가안정대책보조사업의 폐지 검토 필요 「석탄산업법」

# 가. 현황

- □ 탄가안정대책보조사업은 서민생활보호 및 석탄산업의 기반유지를 위하여 석탄 과 연탄의 판매가격을 고시가격으로 지정하고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 등 을 지원하는 제도임(「석탄산업법」제29조¹))
  - 석탄산업의 기반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석탄업체 생산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액 직접보전은 2010년 폐지되고 석탄업 근로자와 그 자녀에 대한 간접지원으로 변경 되었으나,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 개정되면서 2014년부터는 석탄업체에 대한 직접보전과 간접보전이 같이 이루어짐

#### 나, 문제점

□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화석연료보조금 감축합의와 「석 탄산업 장기계획」의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석탄업체에 대한 생산비 직접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한상춘 예산분석관(02-788-4687, spring@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산업통상자원위)」, 2015. 10. pp.118~119 참조

- 1) 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정부는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 2. 석탄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 3. 석탄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 및 광산지역개발사업
  -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사업
  - 5.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과 관련한 기술개발사업
  - 6.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증진을 위한 사업
  - 7.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 8. 진폐(塵肺)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다. 개선방안

□ 석탄가격안정지원비 운영방식은 2009년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비효율적 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감축합의를 계기로 석탄업체에 대한 생산비 직접 지원을 폐지한 것과 「석탄산업 장기계획(2011-2015)」에서 밝힌 석탄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석탄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 으므로, 「석탄산업법」의 석탄업체 생산비 보전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함

# 라. 조문대비표

#### 「석탄산업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정부는 석 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2. 석탄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 석탄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 및 광산지역개발사업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사업 5.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과 관련한 기술개발사업	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6.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증진을 위한 사업	ZAF 7JIN
7.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u>〈삭 제〉</u>
8. 진폐(塵肺)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u>〈삭 제〉</u>

# 31.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법정부담금 요율 인하 「전기사업법」

### 가. 현황

- □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전기사업법」제5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¹))
  - 부담률 변동: 3.13%('01.3월~) → 4.591%('02.1월~) → 3.7%('05.12월~현재)

### 나. 문제점

-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법정부담금 수입이 사업비 지출 규모보다 많아 기금 수지 흑자가 지속되어 여유자금 보유가 증가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 저하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수입은 전기요금 인상과 전기사용량의 증가로 지난 3
     년간 2,865억원 증가(('13) 1조 8,275억원→('15) 2조 1,440억원)하였으나, 기금의
     사업비는 지난 3년간 1,730억원 증가(('13) 1조 7,376억원→('15) 1조 9,106억원)에
     불과하여 기금수지 흑자 지속

김혜미 예산분석관(02-788-4629, hyemi@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I」, 2013. 11. pp.373~374 참조

<sup>1) 「</sup>전기사업법」제51조(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u>1천분의 65 이내</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sup>「</sup>전기사업법 시행령」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2015년 말 기금 여유자금규모는 공공자금예탁금 1조 6,100억원과 기금보유 여유자금 7,800억원을 합한 2조 3,900억원
- 국회는 2012회계연도·2013회계연도 결산 시 법정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치중이라고 보고<sup>2)</sup>
  - 기획재정부의 「2015 기금존치평가보고서」는 현재 시점에서 전력산업의 기반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가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부담금요율 인하 검토를 권고

#### 다. 개선방안

□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여유자금 유지를 통한 전력산업기반기 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 라. 조문대비표

#### 「전기사업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51조(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제51조(부담금) ①
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	
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	
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	
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u>1천분의 65</u> 이내	<u>1천분의 36</u>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	
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sup>\*\*</sup> 개정의견의 부담요율은 예시이고, 구체적 부담요율은 국민부담 완화,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중장기 지출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 필요

<sup>2)</sup> 국회는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력·에너지 분야 의 투자확충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함

# 3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재정지원 조정 「전기사업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가. 현황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력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대국민홍보, 기타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되고 있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¹)
    -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며, 특별지원사업은 새로운 발전소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거나 건설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임
    - 이 외에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홍보사업과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사업이 있음

# 나. 문제점

□ 다른 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부담 을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수연 사업평가관(02-788-4837, syjeon@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2013. 11. pp.106~122 참조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 기피시설의 건설·운영 시 주변지역을 지원해주는 다른 유사사업의 경우, 대부분 원인유발자인 사업자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거나 사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 는 추세임
  - 댐주변지역 지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으며, 공항주변 소음대책비는 정부가 25%, 공항공사가 75%를 부담하고 있음
- 수력발전소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원가의 구성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원자력, 화력, 양수, 신·재생발전소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원가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발전원가 원가구성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원가를 왜곡하고 있음

#### 다. 개선방안

□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발전사업 자가 부담하도록 「전기사업법」제49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라. 조문대비표

#### 「전기사업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 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의 견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	
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	
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	
원사업	
8.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9. <u>「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u>	9. <u>〈삭 제〉</u>
<u>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u>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	10. (현행과 같음)
과 관련한 중요 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의 견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u>「전기사업법」제48조에 따른</u>	드는 비용은 <u>해당 발전사업자가</u> 부담한다.
<u>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u>	
<u>서</u>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u>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u>	② 제1항에 따라 <u>발전사업자가 지원사업을</u>
<u>여 지원되는 금액</u> (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u>위하여 지원하는 금액</u> (이하 "지원금"이라 한
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	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
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
령으로 정한다.	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고용

# 33.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한시적 지원 조항 폐지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 가. 현황

- □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및 부칙(법률 제11141호)제2조, 「국민건강증진법」 부칙(법률 제6619호) 제2항에 따라 각각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 보험재정에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2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은 일반회계와 담배부담금으로
     로부터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루어짐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2006년 만료된 후 2006년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지원하되, 그 지원금액이 당해연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 나. 문제점

- □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기 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과「국민건강증진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지원 기한을 2016년

김윤희 예산분석관(02-788-3738, younhee@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2015. 10. pp.107~110 참조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였음.

- 이는 임시적인 대응방안으로 이후 재개정이 다시 필요한 상황임
- □ 「국민건강보험법」의 지원 기준이 명료하지 못하여 논란 야기
  -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제1항 '예산의 범위에서'와 제2항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문구는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

# 다. 개선방안

□ 법의 한시적 지원 기한에 대한 특례 조항 폐지하고 지원 문구 명료화

# 라. 조문대비표

#### 「건강보험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에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자금을 지원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1141호, 2011.12.31.〉	부칙 〈제11141호, 2011.12.31.〉
제2조(유효기간) 제108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u>〈삭 제〉</u>

#### 「국민건강증진법」

현 행	개 정 의 견
부칙 〈제6619호, 2002.1.19.〉	부칙 〈제6619호, 2002.1.19.〉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사용의 <u>한시적 특례</u> ) 보건복지부장	② (기금사용의 <u>특례</u>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u>매년</u> 기금
<u>2017년 12월 31일까지 매년</u> 기금에서 「국	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
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	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액을 동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
동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sup>1)</sup>	원한다. <sup>1)</sup>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	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수 없다.
③ ~ 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주: 1)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 34. 사회보험통합징수 출연금 분담 기준 마련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 가. 현황

- □ 2011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 험의 보험료를 일괄 징수하는 사회보험통합징수제도가 도입됨
  -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각 공단에서 수행하고, 고지/수납/체납 업무는 국민건 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됨1)
- □ 각 보험 및 연금 재정은 통합징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별도 회계로 운영
  - 출연금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개별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출연금 분담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은 업무량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23)

김태은 예산분석관(02-788-4637, tekim@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2015. 6. pp.53~55 참조

<sup>1)</sup>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sup>2) 「</sup>국민연금법 시행령」제76조의2(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 ① 법 제102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출연금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제14조제1항제2호(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업무에 한정한다) 및 제10호에 따라 수행하는 전체 징수업무 중에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업무(이하 "징수위탁업무"라 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한다. 이 경우 징수위탁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sup>3) 「</sup>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5조의2(출연금의 산정 기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제14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금액의 규모·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건강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은 출연금 분담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 2011년 통합할 당시 사업비는 징수인력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인건비는 이관 인력의 실인건비를 기준으로 정하였는데 동 기준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나. 문제점

- □ 출연금 분담 비율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어 소관부처별, 기금별 예산안 심 의·조정 시 출연금 규모가 조정되고 그 결과 분담률이 일정한 기준없이 나타남
- □ 또한 고지·수납·체납 등 업무비율과 출연금 분담 비율에 차이가 있음
  - 2014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업무비율은 52.8%, 32.3%, 14.9%이고 출연금 분담 비율은 62.2%, 27.4%, 10.4%로 건강보험공단은 업무비율 대비 과다 부담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과소부담하고 있음

#### 다. 개선방안

□ 기관별 고지·수납·체납 건수 등 보험료 징수업무에 비례하여 출연금 분담 규모를 정하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라. 조문대비표

#### 「국민건강보험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114조(출연금의 용도 등) ①·② (생 략) 〈신 설〉	제114조(출연금의 용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각 기금으로부터 지급받				
VC - 2/	는 출연금은 보험료 징수업무(고지·수납·체 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				

#### 「국민연금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소요되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①				
는 비용을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 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에서 건강보험 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금의 규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삭제)				
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국민건강보험공 단이 「국민건강보험법」제14조제1항제2호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업무에 한정한다) 및 제10호에 따라 수행하는 전체 징수업무 중에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업무(이하 "징수위탁업무"라 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				
<u>〈신 설〉</u>	한다. ④ 그 밖의 출연금의 규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96조(기금의 용도) ①·② (생 략) <u>〈신 설〉</u>	제96조(기금의 용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험법」제14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 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수납· 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 준으로 산정한다.

#### 「고용보험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험법」제14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 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수납· 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 준으로 산정한다. 그밖에 출연금의 지급기 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5. 자활사업 대상별 사업목표 명확화 및 사업계획 수립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가. 현 황

□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공공부 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¹)에게 각자의 능력과 욕구에 적합 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임

- □ 현행 자활사업은 사업대상에 조건부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수급자와 차상위계 층 등이 포함되고, 자활프로그램별로 참여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개별 사업 대상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및 성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자활사업 참여 대상별로 탈수급 및 노동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활사업의 내용을 구성
     할 필요가 있음

이채정 사업평가관(02-788-4684, ycj1004@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자활사업평가」, 2012. 12. pp.43~44 참조

<sup>1)</sup>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뜻함.

#### 다. 개선방안

□ 자활의 개념을 조건부수급자의 탈수급, 일반수급자의 근로역량 강화, 차상위계 층의 취·창업을 통한 노동시장 진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사업대상별로 세분 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라. 조문대비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T					
현 행	개 정 의 견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③ (생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③ (현행과					
략)	같음)					
<u>④ 〈신 설〉</u>	④ 보장기관은 자활사업 참여자별 근로능력					
	및 취업적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참여대상자별 자활목표를 달					
	성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u>한다.</u>					
	1. 조건부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					
	<u>급 지원</u>					
	2. 일반수급자의 근로역량 강화 지원					
	3. 차상위계층의 취·창업 지원					
	4. 특례적용 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등 기					
	<u>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u>					

# 36.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 개선 「국민연금법」

#### 가. 현 황

- □ 출산크레딧 제도는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하는 제도이며,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입대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임(「국민연금법」제18조 및 제19조)1)
  -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인정에 따른 국가재정 지원은 해당 대상자가 65세가 되어 노령연금 수령시, 크레딧기간을 연금액에 추가 반영함에 따라 라 발생함<sup>2</sup>)
  - 따라서 출산크레딧 및 군복무크레딧에 따른 국가재정 소요액은 출산 및 군복무 시점이 아닌 향후 연금수령 시점에 발생함

#### 나. 문제점

□ 이와 같은 재정지원 방식은 현재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거나 미미하게 발생하지 만, 크레딧 대상자가 연금을 수급하는 65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예산규모가 급격 하게 증가하여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됨

박연서 예산분석관(02-788-4741, mileend@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 10. pp.13~16 참조 동일취지의 개정 법률안 1건이 제19대 국회에 발의되었음.

<sup>1)</sup>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추가하다.

<sup>2)</sup>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연령이 점점 상향조정 되는데, 1953년부터 1956년생은 6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62세,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63세,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된다.

-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출산크레딧의 경우 2016년의 45백만원 수준에서 점점 증가 하여 2083년까지 199조원(2015년 불변가 기준)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 군복무 크레딧은 2016년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2047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2083년까지 47조원(2015년 불변가 기준)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③

#### 다. 개선방안

- □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연금수급액이 높으므로, 국가재정의 장기적 부담을 완화하려면 출산 및 군복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 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재정부담 완화에 적합할 수 있음
  - 같은 크레딧 제도인 실업크레딧 제도가 보험료 중 일부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을 이미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 검토 필요

#### 라. 조문대비표

#### 「국민연금법」

혀 행	7 사이 검				
언 행	개 정 의 견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				
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 ①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② (생 략)	②(현행과 같음)				

<sup>3)</sup> 보건복지부, 공적연금 특위 보고자료, 2015. 9.

현 행 개 정 의 견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 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 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 한다. 〈후단 신설〉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 다.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2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 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 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 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 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 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 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 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 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 부를 부담한다. 〈후단 신설〉 부를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하 여야 한다.

# 37. 통합사례관리사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가. 현황

□ 통합사례관리사는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을 신속 발굴하고 복지대상자의 욕구 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에 배치된 인력으로, 2015년 현재 전국에 928명 배치

- □ 통합사례관리는 복지재정의 효율적 활용,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사회복 지전달체계를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하는 것으로, 복지전달체계의 최일선에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통합사례관리사의 필요성과 역할 증대
- □ 그러나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법적 근거없이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 문제. 통합사례관리사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장급여법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
  - 통합사례관리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법」에서 업무, 자격, 배치기준 등에 관해 규정¹)

김성수 예산분석관(02-788-4636, samworld@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복지위·여성위 소관]」, 2015. 10. pp.35~36 참조

<sup>1) 「</sup>의료급여법」제5조의2(사례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급여 관리사를 둔다.

#### 다. 개선방안

□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 자격, 배치기준 등에 관해 법적근거 마련 필요

#### 라. 조문대비표

#### 「사회보장급여법」

현 행	개 정 의 견				
〈신 설〉	제5조의2(사례관리) ① 보장기관은 사회보장 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의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간이 등합사례관리사를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 기원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배치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사례관리 사업의 지원 업무 위탁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배치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사례관리 사업의 지원 업무 위탁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38. 뇌연구 활성화에 필요한 근거 마련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가. 현황

- □ 국회는 뇌연구를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1998년 6월에 「뇌연구 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뇌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게 하였음(「뇌연구 촉진법」제17조¹))
  - 이에 따라 2011년 12월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설로 한국뇌연구원이 설립되어 운영중이며 2016년 정부출연금 규모는 239억원임

- □ 한국뇌연구원 내에 "국가뇌조직은행"을 구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 및 보존 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뇌연구원에서 뇌조직 샘플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할 수 없음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르면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 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합2)3)

전용수 예산분석관(02-788-4628, yongsu@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2015. 10. pp.42~43 참조

<sup>1) 「</sup>뇌연구 촉진법」제17조(연구소의 설립) ①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 (出捐)하는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sup>2) 「</sup>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9조(연구를 위한 해부)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의 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

<sup>3)</sup> 참고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뇌'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동법 제10조에서는 시체의 일부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되 연구원이 국가뇌조직은행을 구축하여도 뇌조직을 확보하는 것은 「시체 해부 및 보 존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4)

#### 다. 개선방안

□ 한국뇌연구원 등 「뇌연구 촉진법」제17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연구소에 대해 서는 뇌조직의 확보와 연구가 가능하도록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라. 조문대비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의 견				
제9조(연구를 위한 해부) 인체의 구조를 연구	제9조(연구를 위한 해부)				
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u>단, 「뇌연구 촉진법」에 따른 연구에 필</u>				
	요한 시체 해부는 「뇌연구 촉진법」제17조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에서 할 수 있다.				
제10조(시체의 관리) ① (생 략)	제10조(시체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	②				
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반하여 타인					
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u>〈단서 신설〉</u>	<u>단, 뇌 조직 등</u>				
	<u>의 경우에는 「뇌연구 촉진법」제17조에 의하</u>				
	여 설립된 연구소에 양도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sup>4) 「</sup>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10조(시체의 관리)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가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시체마다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9. 고용보험기금 사업 확대의 시행령 위임조항 개선 「고용보험법」

#### 가. 현황

- □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고용안정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며, 근거가 되는 법률은 2007년에 도입되었음(「고용보험법」제25조¹))
- □ 「고용보험법」제25조는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사업의 도입을 대통령령(「고용보험법시행령」제35조)으로 위임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고용보험기금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음
  - 「고용보험법」제25조는 고용안정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밖에 피보 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업'을 포함
  - 「고용보험법시행령」제35조는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 7개 항 으로 규정2)

김성은 예산분석관(02-788-4634, sekim06@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V」, 2014. 10. pp.221~225 참조

1) 「고용보험법」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고용보험법시행령」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에 관한 교육사업·홍보사업
  - 2. 피보험자등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인턴채용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 업지원사업
  - 3. 고령자·여성·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환경개선사업

- □ 신규사업 추진의 시행령 위임은 정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추진하여 기금 재정수지 악화를 심화시키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운용 원칙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음
  - 2015~2016년 「고용보험법시행령」제35조를 근거로 다수의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이관되거나 신규사업이 도입되었음
    - 2015년에는 5개 사업(1,482억원)<sup>3)</sup>이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이관되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지원금(228억원)은 신규 도입<sup>4)</sup>
    - 2016년에는 2개 사업(36억원)5이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이관되었으며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32억원)은 신규 도입6
  - 고용보험기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재정수지는 2012년 6,445억원에서 2015년 647 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는 24억원의 적자 전망7)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를 근거로 도입된 사업 중 고용센터인력지원, 인턴지원 등은 국가고용인프라 확충,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고용보 험기금에서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업8)
- □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주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므로 「고용보험법」이 기금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 는 방식이 기금운용 취지에 부합

<sup>4.</sup>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sup>5.</sup>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가. 기간제근로자, 나. 파견근로자, 다. 안전관리자, 라. 보건관리자, 마. 단시간근로자

<sup>6. 「</sup>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

<sup>7.</sup> 피보험자등의 근무형태 변경 등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일 가정 양립 지원사업

<sup>3)</sup> 중장년취업지원, 중소기업취업인턴제, 장년취업인턴지원, 고용센터인력지원, 일을통한빈곤탈출상담지원

<sup>4) 「</sup>고용보험법시행령」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5.~6. 신설

<sup>5)</sup> 민간고용서비스활성화와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sup>6) 「</sup>고용보험법시행령」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7. 신설

<sup>7)</sup> 지출은 2012년 1조 6,001억원에서 2015년 2조 6220억원, 2016년 2조 9695억원으로 증가

<sup>8) 「2015</sup>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V」, 2014. 10. pp.224~225 참조

○ 또한 고용보험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할 경우 국회 는 법안심사시 법안비용추계서를 통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부담을 고려할 수 있음

#### 다. 개선방안

□ 「고용보험법」제25조의 대통령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고용보험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라. 조문대비표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고용보험법」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       ①	현 행	개 정 의 견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축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고용보험법」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 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 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2. (생 략)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 〈신 설〉	「고용보험법」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				

현 행	개 정 의 견
	마.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
	<u>간근로자</u>
	<u>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u>
	<u>간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40. 단시간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 채용에 관한 정보 제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 현황

-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보호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일반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나, 노사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제도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입법 목적이 다른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2010년 10월 「2020 국가고용전략」에서는 시간제 근로자의 수요 촉진 및 보호를 위해 가칭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법」제정을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2011년 6월 「시간제근로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국회에 제출되지는 못함
- □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일반법 제정에 앞서 기존의「기간제법」등 개정을 통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나. 문제점

□ 현행「기간제법」은 사용자에게 단시간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 해야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시스템이 없어 법적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강세욱 사업평가관(02-788-4683, sewook@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2014. 10. pp.170~172 참조

<sup>1)</sup> 이하에서는 「기간제법」으로 약칭함.

- □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어 고용될 가능성이 있어야 시간 '선택'제 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다만,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단시간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근로자에게 부여한 경우는 네덜란드나 스위스 등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기 보다는 사용자의 배려와 지도를 통해 유연하게 실현하고자 함

#### 다. 개선방안

□ 단시간근로자의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최소 한의 정보제공과 지원기회를 부여할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라. 조문대비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의 견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 사용자는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u>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u>	통상근로자를 <u>채용하기 위하여 공고 등을</u>				
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u>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u>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	<u>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u>				
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자가 업무의 내용과 자격 등을 알 수 있				
	<u>도록 공지하고 단시간근로자에게 지원할 수</u>				
	<u>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u>				
② (생 략)	②(현행과 같음)				

# 41. 산재보험 재정계산 규정 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가. 현황

- □ 공적연금은 연금을 지급하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입 및 지출을 예측하고, 이에 기초한 재원확보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 으며, 이를 재정계산이라고 함
  - 우리나라의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은 모두 재정계 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 산재보험기금은 공적연금과 같이 장래에 지급할 연금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인 재정계산을 통해 산재보험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수입 및 지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
  - 산재보험의 연금급여 비중은 2008년 31.9%에서 2016년 49.4%로 상승하고, 연금급여 규모는 2008년 1조 920억원에서 2016년 2조 1.217억원으로 증가 전망
    - 고령화에 따라 연금수급자 누적, 평균수명 증가 등으로 인해 연금수급액 누적 되고 있음

김성은 예산분석관(02-788-4634, sekim06@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2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V」, 2013. 7. pp.230~233 참조 동일취지의 개정법률안 1건이 제19대 국회에 발의되었음.

#### 산재보험급여 연금급여 비중

(단위: 억원, %)

								(	.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험급여(A)	34,219	34,631	35,237	36,254	38,513	37,954	39,266	40,791	42,923
연금(B)	10,920	11,566	12,712	14,144	16,580	16,096	17,111	17,973	21,217
(비중, B/A)	31.9	33.4	36.1	39.0	43.1	42.4	43.6	44.1	49.4
일시금	23,299	23,066	22,525	22,110	21,933	21,858	22,155	22,818	21,706

자료: 고용노동부(2016. 2)

#### 다. 개선방안

□ 연금은 일시금과는 달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 및 지출을 예측하여 이에 기초한 재원확보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른 공적연금과 같이 산재보험의 재정계산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라. 조문대비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 행	개 정 의 견
<u>〈신 설〉</u>	제8조의2(산재보험 재정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보험료는 산재보험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산재보험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산재보험의 재정전망과보험료의 조정 및 산재보험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산재보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한다.

# 42. 산업재해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가. 현황

- □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으면 산업재해 가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면서 산재 미신고 및 산재은폐 등으로 인하여 산재보험 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실질적인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해당함
  - 산재 미신고 및 산재은폐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사회연대적 원리에 의해 해결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산재보험의 본래적 목적에 위배됨. 또한,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업주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상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킴

-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신청할 때에 발생하는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함
  -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상 지위, 인사고과 및 임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이를 이유로 산재처리 대신 사업주와 합의하여 공상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강세욱 사업평가관(02-788-4683, sewook@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2013. 7. pp.55~57 참조

#### 다. 개선방안

- □ 산재보험급여 신청으로 인해 근로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 방하고, 임금 하락 등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산재처리 대신 공상 또는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고용보험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청구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1)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2)

#### 라. 조문대비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u>〈신 설〉</u>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
	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
	<u>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u>
	<u>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127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127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
	<u>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u>
	<u>를 한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u>
	<u>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sup>1) 「</sup>고용보험법」제17조, 제105조 및 제116조제1항

<sup>2) 「</sup>국민건강보험법」제93조 및 제115조제1항제2호

환 경

# 43. 수생태계 건강성 보전방안 재정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가. 현황

- □ 수생태계 건강성의 적정 보전·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이를 위한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 제9조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 설치 및 이를 통한 수질오 염도의 상시측정을 의무화하고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도 할 수 있다고 함

- □ 현행법에서 수질오염도 측정은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대책이 수질관리에 보다 치중되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조사를 소홀히 하는 문제 발생
  - 특히, 수생태계 건강성조사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대상지역
     선정에 있어 그 기준이 모호

강상규 예산분석관(02-788-4635, skang@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15. 6. pp.14~17 참조

### 다. 개선방안

□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수질 및 수생태계관리대책의 수립 시 활용되고 수생태계복원 대상지역 선정 시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라. 조문대비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의 견
제9조 <u>(상시측정과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u>	제9조 <u>(수질의 상시측정 등)</u> ①
<u>수생태계 건강성 조사)</u>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공공수역(이하 "하천·호소등"이라	
한다)의 전국적인 <u>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u>	수질을
<u>태를</u>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水質汚染度)를 상	
시측정하여야 하며, <u>하천·호소등의 수</u>	<u>제2조제7호에 따른 수</u>
<u>질·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u>	<u>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수질의 관리 등을</u>
<u>을 전국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u>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9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의 보전에
	<u>관한 기초자료 확보 및 계획 수립, 각종</u>
	개발 사업에 의한 수생태계 변화 예측
	등을 위하여 수생태계의 현황을 전국적
	<u>으로 조사하여야 한다.</u>

# 4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 저가하도급 예방 및 거짓·부실 평가시 재평가 실시 근거 마련 「환경영향평가법」

#### 가. 현황

- □ 현행법에 따르면 재평가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전문 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 영향평가서를 거짓·부당하게 작성하여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1)
- □ 또한 현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제고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한 환경영향평가업무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하도급 절차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서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노덕 예산분석관(02-788-3741, ndhan@assembly.go.kr) 동일취지의 개정법률안 1건이 제19대 국회에 발의되었음.

<sup>1) 「</sup>환경영향평가법」제41조(재평가)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36조제2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③ (생 략)

#### 나. 문제점

- □ 현재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 당하게 작성하여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다만,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3
     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환경영향평가법률」 제65조)
-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저가 하도급으로 인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예측, 환경보 전방안 등이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다수 국민에게 영향
-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편의를 위해 평가항목의 일부에 대해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하도급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평 가서 부실작성의 문제 발생
- □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최종 책임을 지는 발주청에서 평가서의 품질확보를 위해 도급한 평가서 작성등 업무의 하도급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등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 법률에서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²)

#### 다. 개선방안

□ 환경영향평가 재평가의 사유에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당하게 작성한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sup>2) 「</sup>건설기술진흥법」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①~ ③ (생략)

④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

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업무의 대행을 받은 자가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평 가서 부실작성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라. 조문대비표

#### 「환경영향평가법」

혀 행 개정의견 제41조(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 제41조(재평가) ① ------업을 착공한 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 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36조제2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조치 또는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경영 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 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당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게 작성한 경우로서-----장 또는 관계전문기관 등의 장에게 재평 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지켜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신이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 5. 자신이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 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라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조사·측정하는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조사 · 측정하는 업무 업무는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 로써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급하지 아니할 것 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지 아니 할 것.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의 견
<u>〈신 설〉</u>	③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 절차, 하도급 금액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벌칙) ① (생 략)	제7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u>환경</u> 영향평가업무(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조 사·측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한 자	5 <u>환경영</u> 향평가업무(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조사· 측정하는 업무로써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SOC

# 45. 댐건설 장기계획 국회 제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가. 현황

□ 정부는 동법 제4조에 근거하여 댐건설 장기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1))

#### 나. 문제점

□ 댐건설 장기계획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행정부 내부에서 수립·확정되어 시 행되고 있음

김안나 예산분석관(02-788-4650, ankim@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경제·산업)」, 2013. 07. pp.92~93 참조 동일취지의 개정법률안 1건이 제19대 국회에 발의되었음.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제19대국회4조(댐건설장기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댐건설의 기본방침
  - 2. 각종 용수의 수급(需給) 전망
  - 3. 수계별 댐건설계획(농업용수댐은 저수량이 1천만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4. 재원조달계획
  - 5. 입지선정기준
  - 6. 댐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댐건설장기계획과 같은 장기 정부업무계획은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동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사업시행 추진력을 갖게 되는데, 정부는 "댐건설장기계확"과 같은 중장기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장기 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음

#### 다. 개선방안

□ 댐건설장기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라. 조문대비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의 견
제4조(댐건설장기계획) ① ~ ⑤ (생 략)	제4조(댐건설장기계획) ① ~ ⑤ (현행과 같
	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5항에 따	⑥
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	
을 때에는 지체 없이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u>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관
<u>강</u> 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46. 통행료 수입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고속도로 등에 대한 통행료 차등 적용 「유료도로법」

#### 가. 현황

- □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고속도로는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며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음
  - 현행 통행료 징수 규정을 살펴보면, 통행료 징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 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유료도로법」제16조제3항)」)
  - 유료도로관리청은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 제10조)²)

조효정 예산분석관(02-788-4651, jhj0108@assembly.go.kr)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2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V」, 2013. 07. pp.334~342 참조 동일취지의 개정법률안 7건이 제19대 국회에 발의되었음.

<sup>1) 「</sup>유료도로법」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③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그 수납기간, 통행료 총액 및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up>2) 「</sup>유료도로법 시행령」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 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나. 문제점

-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경우「유료도로법」 제18조의 통합채산제의 적용을 받아 모든 고속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간주 하여 통행료를 징수3)
  - 통합채산제는 노선별 통행량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요금체계를 적용
  - 이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등 통행료 총액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거
     나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도로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통행료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음
- □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유료도로법」에 정해진 기간 동안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경우 계속적으로 통행료 징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음
  - 투자비 회수가 끝났거나 법령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기간이 지난 도로에 대한 통행료
     료 면제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다. 개선방안

□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고 회수율이 200%를 초과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차등적인 요금을 적용하도록 함

<sup>3) 「</sup>유료도로법」제18조(통합채산제)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합채산제에 신규 유료도로를 포함시키거나 기승인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이전에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up>1.</sup> 유료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동일할 것

<sup>2.</sup>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

<sup>3.</sup> 유료도로에 대하여 통행료를 통합하여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 라. 조문대비표

#### 「유료도로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18조(통합채산제)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	제18조(통합채산제) ①
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둘 이상의 유료도	
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	
료도로관리권자가 통합채산제에 신규 유	
료도로를 포함시키거나 기승인 내용을 변	
경할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이전에 유료도로관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의 통합채산제에도 불구하고 유
	<u>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u>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
	<u>과하고 회수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u>
	<u>는 개별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유료도</u>
	로의 통행료 수납 총액, 통행료 수납기간,
	다른 유료도로와의 교통상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간별 차등요금제 등의 통행료
	<u> 감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 집 필

심 의 I 윤용중 예산분석심의관

상지원 예산분석총괄과장

서세욱 산업예산분석과장

문종열 사회예산분석과장

박동찬 행정예산분석과장

이은정 법안비용추계1과장

장태성 법안비용추계2과장

이선주 법안비용추계3과장

**작성 I**심지헌 조효정 한상춘 전용수

김혜미 한성진 윤성식 심예원 김성수 강상규 김성은 정수현

김태은 채미강 오명희 강건희 김경수 조가영 김월래 한노덕

김태완 남정희 이미연 김안나

최근성 윤주철 현승철 박연서 이진우 김윤희 여은구 조은영

이채정

유항재 이종민 강세욱 임길환 유규영 전수연

####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법률 개선과제

발간일 2016년 6월 3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891-1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6